

2023학년도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모집요강



차 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 본 모집요강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확정본은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www.admission.ac.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
III.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2
IV. 지원자격 .....	4
V.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	8
VI. 제출서류 .....	9
VII. 지원자 유의사항 .....	11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13
IX.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	13
<b>[양식안내]</b>	
양식1.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	14
양식2.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학력조회 동의서 .....	17
양식3.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	18
양식4.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	19



##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공		모집인원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약학대학	약학과		3명	00명
간호대학	간호학과		7명	
미래융합대학	생명과학부	세포·유전자재생의학 전공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바이오식의약학 전공		
	헬스케어 융합학부	디지털보건의료 전공 스포츠의학 전공 경영학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심리학 전공 SI의로데이터학 전공		

-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획득(2019. 12. 17.) [인증기간: 2020. 6. 11. ~ 2025. 6. 10.]
- ※ 간호대학은 교원양성기관 인증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
-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모집단위별 수용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씩 별도 선발함(단, 약학대학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 ※ 2023학년도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모집단위, 학과명칭, 모집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입학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 III.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1. 입학원서 접수방법(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적용)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원서접수대행사(진학어플라이, <a href="https://www.jinhakapply.com">https://www.jinhakapply.com</a> )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해야 함(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는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원서 입력 및 사진 첨부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파일 형식)로 업로드 함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등 기재사항 수정 불가
전형료 결제	•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수험번호 확인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임
서류 제출(해당자)	• 제출기한: 2022. 7. 4.(월) ~ 11.(월)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재외국민 담당자 앞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발송용 봉투표지는 원서접수 후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등기우편: [국내발송] 마감일 [2022. 7. 11.(월)] 우체국 소인 유효 [국외발송] 2022. 7. 13.(수)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 서류 제출 기간 중 매일 10:00 ~ 17:00 [단, 2022. 7. 5.(화) ~ 6.(수)은 방문 제출이 불가하며,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 7. 4.(월) 10:00 ~ 8.(금) 18:00	• 원서접수대행사(진학어플라이)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마감	2022. 7. 4.(월) 10:00 ~ 11.(월) 17:00	• 원서접수대행사(진학어플라이) 작성 후 저장 - 입력 기간 이후, 입력(수정) 불가 -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온라인 제출) -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는 증빙자료 목록표와 함께 별도 제출
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22. 7. 4.(월) 10:00 ~ 11.(월) 17:00	• 제출기한: 2022. 7. 4.(월) ~ 11.(월)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 재외국민 담당자 앞 • 등기우편 - [국내발송] 마감일 [2022. 7. 11.(월)] 우체국 소인 유효 - [국외발송] 2022. 7. 13.(수)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 서류 제출 기간 중 매일 10:00 ~ 17:00 (단, 2022. 7. 5.(화) ~ 6.(수)은 방문 제출이 불가하며,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발송용 봉투표지는 원서접수 후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면접평가	2022. 8. 12.(금) ~ 21.(일) 중 해당 지정일	•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 <a href="https://admission.cha.ac.kr">https://admission.cha.ac.kr</a> )
합격자 발표	2022. 9. 8.(목) 16: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재외국민(약학대학 제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022. 12. 15.(목) 16: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재외국민(약학대학)
합격자 등록	2022. 12. 16.(금) ~ 19.(월)	•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 <a href="https://admission.cha.ac.kr">https://admission.cha.ac.kr</a> )
충원합격자 발표	2022. 12. 20.(화) ~ 26.(월) 18:00	
충원합격자 등록	2022. 12. 21.(수) ~ 27.(화) 16:00	
등록금 납부	2022. 2. 7.(화) ~ 9.(목)	

※ 본교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임

※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람

※ 모든 서류는 원본(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포함)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원본 서류는 희망자(원본반환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면접 전 응시자에게 반환함

※ 응시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사정 때문에 서류발급 제출이 어려운 경우, 면접평가 고사일 전 [2022. 8. 11.(목)]까지 서류 제출을 인정함(단,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사정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함)

## IV. 지원자격

### 1.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전형명	법령 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로서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중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학생, 부모 모두 학력요건·국외 개학기간·국외 체류일수·국외근무자 재직기간을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구분과 관련 없이, 국외근무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중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국적은 관계하지 않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중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1) 공통사항

-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 국외에서 수료해야 함
- 학력요건, 국외재학기간 및 국외 체류일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 국외 근무·재학·체류 기간

구분	내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한 국외 재직·재학·체류기간 부족으로 지원자격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 검토 후 부족한 기간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함

##### 3) 세부 지원기준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정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1) 공통사항

- 국외에서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한 기간이 있더라도 지원 가능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국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 유아원, 유치원, 여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세부 지원기준

- **국외재학기간**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 학제별 자격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1) 공통사항

-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함
- 학생이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
  - ※ 우리나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3. 기타 안내사항

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자격 인정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

나. 외국학교 인정 기준

- 1)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의 학교
- 3)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예외)
- 4)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5) 해외근무자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다. 재학기간 인정 기준

- 1)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우리나라 학제 기준,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나)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라)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4)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함
- 6) 이외 지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그 외 유의사항**

- 1)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2)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3년 2월 28일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 3) 해당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외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4)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자격 충족자는 반드시 합격 후 2023. 2. 17.(금)(발송 접수일 기준)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조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함
- 5)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약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V.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 1.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과대학	선발모형	모집단위		
		서류평가	면접평가	전형총점
간호대학	일괄합산	30(30%)	70(70%)	100(100%)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 서류평가,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본교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2.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약학대학	재외국민	국어, 수학(필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전 교육과정 이수자	미적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3. 평가안내사항

구분		내용
서류평가	평가내용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와 제출된 전형자료를 검토하여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한국어 능력에 대해 정성적 종합평가
면접평가	평가내용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와 제출된 전형자료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한국어 능력에 대해 종합적 평가하는 심층 면접

※ 약학대학의 경우, 지원자의 약학인재로서 가치관, 인성,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 추가 시행

###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사정 원칙에 따라 모집인원 내로 선발

- 1) 면접평가 점수 우수자
- 2) 면접평가 적공적합성 점수 우수자
- 3) 면접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우수자
- 4) 면접평가 인성 점수 우수자
- 5) 서류평가 적공적합성 점수 우수자
- 6)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우수자
- 7) 서류평가 학업역량 점수 우수자
- 8) 서류평가 인성 점수 우수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 VI.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전형명	제출서류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원서</li>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li> <li>•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li> <li>•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li> <li>• 여권사본(부모, 학생)</li> <li>•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li> <li>•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li>•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당자에 한함)</li> <li>•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li> <li>•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li> <li>•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li> </ul>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원서</li>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li> <li>•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li> <li>• 신분증사본(학생, 재외국민에 한함)</li> <li>• 외국국적증명서(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에 한함)</li> <li>•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li> <li>•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li> <li>• 재정보증서류(외국인에 한함)</li> <li>•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li> <li>•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li> <li>•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li> </ul>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원서</li>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 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 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 초·중학교 졸업증명서*</li> <li>•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li> <li>•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li> <li>•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li> <li>•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li> <li>• 재정보증서류</li> <li>•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 소정양식)**</li> <li>•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소정양식)</li> <li>• 교육과정 기록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본교 소정양식)</li> </ul>

-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 \*\* 표시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대행사를 통해 직접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는 증빙자료 목록표와 함께 별도 우편 제출
- ※ 재직 및 재학, 체류기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의 년, 월, 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함
- ※ 재직증명서 상 해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국외 근무기간 및 국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양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 부모 사망 또는 이혼 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일 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재정보증서류 아래 ①~③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단, 중국인은 ① 제출)
  - ① 재정보증인이 본인이나 부모일 경우: 본인이나 부모의 미화 \$18,000이상 은행 예금잔액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② 재정보증인이 한국인일 경우: 보증인의 미화\$18,000이상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③ 장학금 지급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초청기관 및 연구책임자(개인 가능)가 발급한 지급 예정 증명서(학비와 생활비가 충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 2. 제출서류 유의사항

- 가.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서류의 제출 시에는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번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나.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다. 해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마. 일정 기간 재학하였으나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성적증명서에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재학사실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 바.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사.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아.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해야 함
- 자.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는 소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 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 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1)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문서
  - 2)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1)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음)
-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www.hcch.net](http://www.hcch.net) 참조 (관련 문의 ☎ : 02-2100-7600, 외교부)

## VII. 지원자 유의사항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지원 횟수 및 복수지원 허용 범위

- 1)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3월, 9월) 등 정원외 전형 포함]은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 2)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3)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4)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5)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됨

나.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 전형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2) 전문대학(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3)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해당)
- 4)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합격자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

- 1) 합격자는 정해진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2)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하며,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고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3) 수시모집에서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4)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2.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중 한 개 전형,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복수지원 불가)**

나. 기재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바람

다.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라.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마. 결제 도중 창이 닫히거나 시스템 종료 등으로 인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바.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사.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 3.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수험생은 면접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음
  - 나.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를 통해 발표함
  - 다.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 라.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마.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절차를 밟아야 함
  - 바.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례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4. 합격취소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 가. 합격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이 취소됨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합격 후라도 지원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나. 부정행위자 처리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형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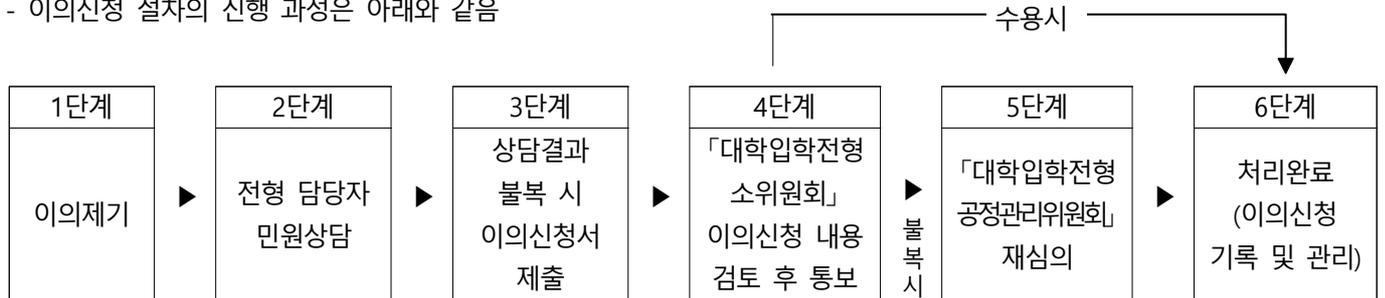
- 1)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2)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3)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5.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 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의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는 재외국민 전형 약학대학의 지원자(전 교육과정 이수자/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외)는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미동의 또는 수능 미응시의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지원자는 대학의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절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1.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가.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가 등록을 마친 후 등록(등록예치금 납부자 포함)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입학홍보처로 환불 신청을 해야 함
- 나.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다.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바람
- 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cha.ac.kr>) → 입학정보센터 → 공지사항 →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등록포기 안내' 참조
- 마. 본교 입학일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함
- 바. 문의처: 입학홍보처 031) 850-9021, 9023~24, 9058~9, 8919

## IX.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 1. 전형료(일괄 납부)

모집단위	전형료		수수료	합계
	서류평가	면접평가		
간호대학, 미래융합대학	95,000원		5,000원	100,000원
약학대학	110,000원		7,000원	117,000원

### 2. 전형료 환불 안내

-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전형료 전액(수수료 제외)을 환불함
  -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나. 응시자의 착오로 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액 전액
- 다. 전형료 비례 환불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3. 4.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4)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 응시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결시 등의 각종 개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함
  - ※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유의해야 함

##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b>수험번호</b>		<b>성명</b>	
<b>모집단위(학과)</b>		<b>생년월일</b>	
<b>지원자격</b> (해당하는 칸에 ○ 표시)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기간	학교명 또는 기관명	소재지
<b>주요 학력</b>	. . ~ . .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이후 현재까지의 학력을 가급적 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기입하시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대행사에서 2022. 7. 4.(월) 10:00 ~ 11.(월) 17:00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 최종 저장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 자기소개서는 본교 소정의 양식에 맞춰 제시된 문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 제3자의 대리 작성, 표절 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학업·진로·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차 의과학대학교에 입학 후, 학업(진로)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목록

- ※ 지원자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내용 중 별도로 증빙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자료 첨부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증빙자료는 축소·확대 편집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단이 불가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증빙자료 제출 시, 서류를 제본하거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USB와 CD 등 비문서 형태 자료는 제출은 불가합니다.
- ※ 증빙자료는 공식적인 발급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평가에 반영되며, 이외 서류의 평가 반영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 규격 및 분량: A4용지 사이즈, 단면, 20매 이내(컬러/흑백 상관없음)

번호	첨부자료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별 필수 제출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첨부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첨부자료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양식.3】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 차 의과학대학교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교육과정 기록표

성 명				수험번호					국적				연락처	Home:					H-P: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아래에 재학한 학교명과 재학기간을 초, 중, 고교 순서대로 기입(재학증명서 상의 정확한 날짜 기입) / 재학한 학년 및 학기에 V표시																															
학 교 명	학기제 □2 □3 □4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2	□3	□4	~	년 개월																											
고등학교까지의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교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 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 간	거주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 (父) 성 명 (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 (母) 성 명 (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_\_\_\_\_ (인) (반드시 날인 요망) 지원자와의 관계 :

